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728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72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합5228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D

변론 종결 2016. 3. 22.

판결 선고 2016. 4.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합5228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제1심 공동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4. 1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26,151,3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151,37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B과 피고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48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2014년 2월" 부분을 "2015년 2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10행의 "이에 의하면" 부분을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13행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 및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부분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15쪽의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부분을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20행의 "피고 D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E 토지가 공유가 아닌 총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 "올라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E 토지가 공유가 아닌 총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임영우

판사최한순

별지